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59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차규근 · 정동영 · 서왕진
김문수 · 황운하 · 전종덕
박지원 · 최혁진 · 김준형
정춘생 · 김선민 · 강경숙
백선희 · 이해민 · 양부남
신장식 · 윤종오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함으로써 민주주

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조 신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제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의 예산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념사업의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9조(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u></p> <p><u>를 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 예</u></p> <p><u>산 제한) ① 국가, 지방자치단</u></p> <p><u>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u></p> <p><u>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u></p> <p><u>기관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u></p> <p><u>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u></p> <p><u>제2조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범</u></p> <p><u>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국제</u></p> <p><u>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u></p> <p><u>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u></p> <p><u>제14조까지에 따른 반인도적</u></p> <p><u>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u></p> <p><u>념사업의 예산을 지원하여서는</u></p> <p><u>아니 된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u></p> <p><u>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u></p> <p><u>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u></p> <p><u>다.</u></p>